

[별표 1] <개정 1998.12.31, 1999.8.6, 2001.8.25, 2002.9.18, 2003.8.21>
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(제7조관련)

구 분	건 설 업 종	업 무 내 용	건설공사의 예시
일반건설업	1. 토목공사업	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·개량하는 공사	도로·항만·철도·댐·하천 등의 건설, 택지조성, 간척·매립공사 등
	2. 건축공사업	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	
	3. 토목건축공사업	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	
	4. 산업·환경설비공사업	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, 환경오염을 제거·감축하기 위한 시설, 에너지 등의 생산·저장·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	제철·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, 소각장·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, 발전소설비공사 등
	5. 조경공사업	종합적인 계획·관리·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	
전문건설업	1. 실내건축공사업	- 실내건축공사 :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·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- 목재창호공사 : 목재로	실내건축공사(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다),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, 목재

	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	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, 목재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
2. 토공사업	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	굴착공사·성토공사·절토공사·흙막이공사·철도도상자갈공사 등
3. 미장·방수·조적공사업	• 미장공사 :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·플러스터·회반죽·흙 등을 바르거나 내·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·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뿔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• 타일공사 : 구조물 등에 점토·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• 방수공사 : 아스팔트·실링재·에폭시·시멘트모르타르·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·건축구조물,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·방습·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• 조적공사 : 블록·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	일반미장공사, 미장 모르타르공사, 미장 뿔칠공사, 다듬기공사, 줄눈공사, 단열재 접착 및 뿔칠공사 등 내·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, 에폭시공사, 방습공사, 도막공사,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, 벽돌쌓기공사, 벽돌붙임공사 등
4. 석공사업	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	돌쌓기공사·돌붙임공사·석재공사·돌포장공사 등

5. 도장공사업	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로 등을 솔·로울러·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	일반도장공사·도장뽕칠공사·차선도색공사·분사표면처리공사·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·부식방지공사 등
6. <삭제>		
5.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	• 비계공사 :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• 파일공사 :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• 구조물해체공사 :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	일반비계공사, 발판가설공사, 빔운반거상공사, 특수중량물설치공사,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공사 등 샌드파일공사, 말뚝공사 등
8.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	• 창호공사 : 금속재·비철금속재·합성수지·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• 철물공사 : 철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	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창호공사, 발코니창호공사, 외벽유리공사, 커튼월창호공사, 배연창·방화문 설치공사, 자동문·회전문 설치공사, 유리공사 등 수문설치공사, 탱크공사, 셔터설치공사 그 밖에 난간·계단·천정·굴뚝·가드레일·가드케이블·표지판·도로교통안전시설물·울타리·방음벽·버스승강대·옥외광고탑·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

		사 등
	- 온실설치공사 : 농업·임업·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- 지붕·판금공사 : 기와·슬레이트·금속판·아스팔트·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,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- 건축물조립공사 :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·외벽·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	농업·임업·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지붕공사, 지붕단열공사, 지붕장식공사, 판금공사, PVC가공부착공사,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·ALC판넬·PC판넬·세라믹판넬·알루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
9. 지붕·판금·건축물조립공사업		
10.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	철근·콘크리트로 토목·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	철근가공 및 조립공사, 콘크리트공사,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,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,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·기계화경작로·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
11. <삭제>		
12. 기계설비공사업	건축물·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·위생·냉난방·공기조화·기계기구·배관설비 등을 조립·설치하는 공사	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·환기·공기조화·냉난방·급탕·주방·위생설비·열절연공사, 방음·방진공사, 옥내급배수관개량·세척공사·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, 무대

		기계장치공사, 자동 창고설비공사, 냉동 냉장설비공사, 집진 기공사, 기계설비자 동제어공사, 철도기 계신호공사, 건널목 차단기공사 등
13. 상·하수도설비 공사업	- 상수도설비공사 : 상수 도, 농·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 나 상수도관, 농·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- 하수도설비공사 :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 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관을 부설하는 공사	취수·정수·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, 상수도, 농·공업용수 도 등의 용수관 설 치공사(옥내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 다), 관세척 및 갱 생공사, 각종 변류 이형관설치공사, 옥 외스프링클러설치공 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, 하수·우수관 부설 (옥내급배수설비공 사를 제외한다)및 세척·갱생공사 등
14. 보링·그라우팅 공사업	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 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 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 합처리하는 공사	보링공사, 그라우팅 공사, 착정공사 등
15. 철도·궤도공사 업	철도·궤도를 설치하는 공사	궤광공사, 레일공사, 레일용접공사, 분기 부공사, 침목공사, 도상공사, 궤도임시 받침공사, 선로차단 공사, 아이빔 및 거 더설치공사, 건널목

16. 포장공사업	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·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·활주로·광장·단지·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(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)와 이의 유지·수선공사	보관공사 등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,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, 유색·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,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,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
17. 수중공사업	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	수중암석파쇄공사·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·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
18. 조경식재공사업	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·관리	조경수목·잔디·지피식물·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,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·관리공사 등
19.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	조경을 위하여 조경석·인조목·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·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	조경석·인조목·인조암 등의 설치공사, 야외의자·파고라·놀이기구·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, 인조잔디공사 등
20. <삭제>		
21. 강구조물공사업	-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·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-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·설치하는 공사	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·설치하는 공사,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·설치공사,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, 철탑공사,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

22. <삭제>	•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	사 등
23. 철강재설치공사 업	•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·설치하는 공사 •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·설치하는 공사	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·조립·설치공사,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·설치하는 공사
24. 삭도설치공사업	삭도를 신설·개설·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	케이블카·리프트의 설치공사 등
25. 준설공사업	하천·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	항만·항로·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
26. 승강기설치공사 업	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	승객·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,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
27. 가스시설시공업 (제1종)	•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•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•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·집단공급시설·저장소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•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•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• 고압가스배관의 설치·변경공사	
가스시설시공업	• 제3종의 업무내용	

	(제2종)	•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•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•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•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•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	가스시설시공업 (제3종)	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1.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·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2.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·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28.	난방시공업 (제1종)	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·주철재보일러·온수보일러·구멍탄용온수보일러·축열식전기보일러·태양열집열기·1종압력용기·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·세관공사

	난방시공업 (제2종)	-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-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·용량 5만 kcal/h 이하의 온수보일러·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·세관공사
	난방시공업 (제3종)	-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-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·금속요로의 설치공사
	29. 시설물유지관리업	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. 1. 건축물의 경우 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 공사 2.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·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·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.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·보수·보강공사

비 고

1.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,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
2.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·재료·시설·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.
3.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.
4.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.
5.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(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)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·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.
6. 난방시공업(제1종에 한한다)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㎡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.
7. 난방시공업(제2종에 한한다)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㎡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.
8.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·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.